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2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정을호·박용갑·박정현

조정식 • 이해식 • 김문수

문정복 • 이훈기 • 홍기원

서미화 · 강준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초·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,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특히,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,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4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. 임용권자는 즉시이를 수용하고,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휴직) ① (생 략)	제44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
	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교
	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
	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
	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
	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
	있다.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
	용하고,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
	<u>야 한다.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